

|  |                |       |                         |
|--|----------------|-------|-------------------------|
|  <b>과천시공사</b> | <h1>G-브리프</h1> |       | 시민이 안전하고<br>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
|  | 주관 부서          | 도시기획부 | 발간 일자                   |

## 규제샌드박스 도입 현황 및 지방정부의 역할

|                             |   |
|-----------------------------|---|
| 1. 규제샌드박스 개요 .....          | 2 |
| 2. 규제샌드박스 유형 .....          | 3 |
| 3. 규제샌드박스 도입 현황<br>.....    | 4 |
| 4. 규제샌드박스 관련<br>주요 쟁점 ..... | 7 |
| 5. 규제샌드박스과 지방정부<br>.....    | 8 |

### ◆ 주요 내용 ◆

- 규제샌드박스: 신기술 사업화에 대한 필수적인 시험·검증을 하기 위하여 **현행 법령상 제약을 일시적으로 유예·면제**시켜주는 규제특례 제도
- 규제샌드박스의 유형으로 실증 및 테스트 목적인 ‘신속확인’, ‘실증규제특례’와 시장출시 목적인 ‘임시허가’가 있음
- 우리나라는 2019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였으며, **尹정부는 국정과제로 보건 의료 특화 제약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을 제시함
- 과도한 중복성 및 사후지원체계 부재 문제 해결 등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공공기관 또한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지원** 및 지역 관내 기업의 제도 승인 및 사후 관리까지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해봐야 함

# 1

## 규제샌드박스 개요

### ○ 규제샌드박스 정의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말로서,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혁신의 실험장을 의미

(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 (목적) 법·제도와 현실(기술진보) 간의 갈등·상충과 제도적 공백의 제약을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기술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신기술·신산업 성장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신기술 사업화에 대해 필수적인 시험·검증을 하기 위해서 현행 법령상 제약을 일시적으로 유예·완화·면제하는 것이지 기존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무력화하고자 하는 취지는 아님
- ⇒ 규제샌드박스는 영구적 조치가 아니라 일시적·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지님

### ○ 규제샌드박스 등장과 도입

#### 영 국

- 규제샌드박스는 2016년 영국의 금융감독청(FCA)이 금융상품을 실생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노베이션 허브를 만든 것이 그 시초임
- 영국 정부는 핀테크 부문에 대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일정 주기로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신청을 받고, 3~6개월간 혁신기술을 활용한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방식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싱 가 포 르

- 아시아 금융의 허브 싱가포르의 영국 규제샌드박스를 벤치마킹하여 영국과의 '핀테크 브릿지(FinTech Bridge)' 를 출범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단계부터 시작함
- 영국과 달리 금융·의료·환경·교통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였으나, 높은 진입장벽의 문제가 불거지자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실험을 신속히 착수할 수 있는 '샌드박스 익스프레스' 를 실시함

## 2

## 규제샌드박스 유형

### ○ 규제샌드박스 유형별 내용과 절차

|      | 신속확인   | 실증규제특례  | 임시허가  |  |  |
|------|--|---|---|--|--|
| 목적   | 실증 및 테스트 목적<br>(구역·기간·규모 제한)   |   | 시장출시 목적<br>(구역·규모 제한 정도가 낮거나 없음)                              |  |  |
| 주요내용 |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서비스제품의 규제가 모호한 경우 법령 적용 여부와 규제존재 여부 등을 신속히 확인<br>(30일 이내 화신)   | 신기술·서비스제품이 법령공백 규제 적용 부적합 금지 및 불허인 경우 제한된 구역·기간 (2년 이내 1회 연장)·규모 내에서 규제 적용 배제 | 신기술·서비스제품의 법령공백 규제 적용 부적합인 경우 시장 출사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 (2년 이내 1회 연장) |  |  |
| 절차   | 과제신청<br>과제접수                 > 소관부처 화신 (30일 이내)                 > 사전검토위원회<br>심의위원회                 > 과제시행/운영                 > 결과보고서<br>법제도 정비 |   |   |  |  |

(출처: 경기연구원(2019).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재구성)

### ○ 규제샌드박스 유형별 심의 기준

| 실증규제특례   | 임시허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li> <li>✓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li> <li>✓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 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li> <li>✓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li> <li>✓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li> <li>✓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의 타당성</li> <li>✓ 해당 기술·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능력</li> <li>✓ 「정보통신융합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시험 및 검사 결과</li> </ul> |

(출처: ICT 규제샌드박스. [www.sandbox.or.kr](http://www.sandbox.or.kr))

- 1) 사업 승인여부는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2년(최대 4년)간 과제시행 후 결과에 따라 법·제도 정비여부를 결정(금융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 6개월 추가 연장될 수 있어 특례 기간이 최대 5년 6개월임)

- 신속확인 은 관련 부처가 규제 존재여부를 30일 이내 회신하는 제도이며, 실증규제특례는 규제가 모호하거나 법령공백, 규제적용 부적합, 금지·불허 사업에 대해 구역, 기간, 규모를 제한하고 실증을 허가하는 제도
- 임시허가는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현행 규제에서 공백이 존재하거나 규제 적용이 부적합한 사업에 대해 시장출시 목적으로 2년간 규제 없이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가하는 제도
- ⇒ ‘실증규제특례’ 는 현행 규제에서 금지·불허인 경우에 활용하며, 사업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이 ‘임시허가’ 와의 중요한 차이
- ⇒ 영국, 일본 등 다른 국가의 규제샌드박스 는 실증특례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우리나라는 실증특례뿐만 아니라 임시허가 및 신속확인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

### 3 규제샌드박스 도입 현황

#### ○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현황 및 주요 내용

- 우리나라는 2017년 9월 국무조정실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을 통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을 발표함
- 법 개정을 통해 2019년 이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함

|             |  |
|-------------|--|
| <b>2019</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4개 부처에서 4개의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됨</li> <li>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ICT융합 규제샌드박스(「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li> <li>②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li> <li>③ 금융위원회의 금융혁신 규제샌드박스(「금융혁신법」 제정)</li> <li>④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의 지역혁신 규제샌드박스(「지역특구법」 전부개정)</li> </ul> |
| <b>2020</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 법률 개정을 통해 2개의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추가 도입됨</li> <li>① 국토교통부의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스마트도시법」 일부개정)</li> <li>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연구개발특구법」 일부개정)</li> </ul>   |

(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1). 「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방안」. 재구성)

- 규제샌드박스 관련 尹정부 주요 국정과제

| 과제 번호 | 국정과제                  | 주요내용   |
|-------|-----------------------|--|
| 16    |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규제샌드박스 플러스+(제도 전면개편)를 통해 이해갈등 조정, 제도의 통일성 제고 등 신산업 성장 지원</li> </ul>  |
| 25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약 바이오)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펀드 조성, 의과학자 등 융복합 인재양성, 바이오 헬스 규제 샌드박스 등 규제개선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li> </ul>   |
| 35    |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ICO<sup>2)</sup> 여건 조성)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 과 ‘비증권형’ 으로 규제 체계 마련</li> <li>-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 조성 및 규율체계 확립</li> <li>↳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 활용</li> </ul> |

- 규제샌드박스 현황(2022. 9월 기준)



(출처: 규제샌드박스. www.sandbox.go.kr)

↳ 실증특례 617건 / 임시허가 92건 / 적극해석 43건

\*\* **적극해석**: 실증특례 혹은 임시허가로 신청한 사례 중 협의 과정에서 규제특례 대상은 아니나 적극적인 기업애로해소를 목적으로 소관부처에 정책을 권고하거나 규제 없음을 확인하여 신청기업에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개시를 돕는 특례 방법

2)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

○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 사례(2022. 9월 승인)

**1 파워뱅크를 활용한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              |   |
|--------------|---|
| <b>신청 내용</b> |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하여 찾아가는 충전서비스 제공   |
| <b>현행 규제</b> |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 등이 부재 |
| <b>심의 결과</b> | 전기차 대비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국내 여건상 이동형 충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함                    |
| <b>기대 효과</b> |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유동적으로 대응 가능   |

**2 지능형(AI) 배리어프리(barrier-free)<sup>3)</sup> 키오스크**

|              |   |
|--------------|---|
| <b>신청 내용</b> | 디지털카메라를 통해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자동 높이조절, 수어, 음성, 원격지원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 <b>현행 규제</b> | 「개인정보보호법」상 범죄수사, 교통단속 등 제한된 목적 외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운영이 금지되어 키오스크에 디지털카메라 설치 불가 |
| <b>심의 결과</b> |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과 노약자, 어린이의 정보접근에 대한 권리 보장 및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함                  |
| <b>기대 효과</b> |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성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실증 데이터 수집을 통해 키오스크 기술력 확보에도 기여                         |

**3 공유 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              |  |
|--------------|--|
| <b>신청 내용</b> | 공유자전거 차체(프레임·바구니·뒷바퀴판)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                          |
| <b>현행 규제</b> | 「옥외광고물법」시행령 상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아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 불가 |
| <b>심의 결과</b> | 광고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함  |
| <b>기대 효과</b> | 옥외광고물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새로운 광고 서비스를 체험하는 계기로 작용         |

3)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barrier)을 제거하자는 것

## 4

## 규제샌드박스 관련 주요 쟁점

### ○ 규제샌드박스 관련 주요 쟁점

- 우리나라의 규제샌드박스 매년 200건 이상 승인되고 있어 양적 추진성과는 상당한 수준이나, 당초 규제샌드박스 도입 취지인 관련 규제를 없애거나 제도 개선까지 도달한 승인 건수가 많지 않아(총 632건中129건, 2022. 2. 24. 기준) 운영에 대한 질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 1 규제샌드박스의 과도한 중복성에 따른 비효율성

- ✓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신청하는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각 제도별 유사·중복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쉬움
- ✓ 여러 부처 소관 규제샌드박스 제도로부터 특례를 부여받은 유사·중복 실증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인력 및 시간 낭비 초래가 우려됨

#### 2 규제샌드박스 관련 제도간 상충·갈등의 문제

- ✓ 동일·유사한 분야나 대상에 대한 규제샌드박스가 상이한 법적 요건 및 효력을 내용으로 부여될 경우 이에 따른 법리적 충돌이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3 실질적 효과 창출을 위한 사후지원체계 부재

- ✓ 실증특례기간이 끝나면 실증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의 확대는 혁신적인 기업이 연구개발을 함에 있어 잠재적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 우리나라는 최대 2+2년(2년 기간 내 1회 연장 가능)의 충분한 실증기간을 부여하고 있지만, 제도 적용의 종료 후 사후관리 및 행정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출처: 중소벤처기업연구원(2021). 「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방안」. 재구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22).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재구성)

## 5

## 규제샌드박스와 지방정부

- **중앙·지방정부 간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 지방 단위에서 산업 내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 및 해결이 보다 용이하며, 중앙정부가 주도할 경우 지역 스타트업의 다양한 규제혁신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음
  - 지역별 기술 및 사업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지역 내 테스트베드에서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으로써 사업 효과가 극대화되며,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지방분권 정책 추진 방향에도 부합함
-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경기연구원(2019)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 추진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간의 사항을 조사한 결과, 스타트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성공적인 규제혁신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제도의 내용과 구체적인 정보를 획득하고 과제신청을 쉽고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의 전담기구와 인력 배치의 필요성을 언급함
- **공공기관의 규제샌드박스 참여 비중 확대**
  -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직접적으로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하는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지속적인 규제혁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직접적인 신청 주체가 아니더라도 중소벤처기업과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간접적 참여 방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함  
(ex) 체육·공원시설 장비 개발을 위한 MOU 체결을 통해 사용자 경험 데이터 및 테스트베드 제공 등
  - 지역에 기반을 둔 공공기관은 지역 관내 기업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사후 관리까지 지원함으로써 혁신 클러스터 조성 및 신산업에 대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경기연구원(2019)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을 바탕으로 재구성함

## ■ 참고문헌

### [공공 간행물]

- 경기연구원. (2019).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이슈&진단 No.359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2). 지역혁신형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STEPI Insight 제286호
- 국회입법조사처. (2022). 저성장 극복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NARS 입법·정책 제103호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1). 우리나라 현행 규제샌드박스의 제도적 효율성 제고방안. KOSI 중소기업 포커스 제21-19호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발전방향과 공공기관의 역할. 공공경제 2021 제8호

### [인터넷 자료]

- 김세종. (2022. 2. 24.). 규제샌드박스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소기업신문. Retrieved from <http://www.sme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54>
- 김연숙. (2021. 4. 13.). 7월부터 금융샌드박스 특례기간 사실상 최대 4년→5년6개월(종합). 연합뉴스 Retrieved from <https://www.yrn.co.kr/view/AKR20210413049351002?input=1195m>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규제샌드박스팀. (2022. 9. 5.). 새정부 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 Retrieved from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4365>
- 이창희. (2021. 2. 15.). 미국·영국·싱가포르·일본, 그들의 규제샌드박스는 지금. 더퍼스트미디어. Retrieved from <https://www.thefirstmedia.net/news/articleView.html?idxno=70796>

### [홈페이지]

- 규제샌드박스. [www.sandbox.go.kr](http://www.sandbox.go.kr)
- 금융규제 샌드박스. [sandbox.fintech.or.kr](http://sandbox.fintech.or.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http://www.korea.kr)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sandbox.kiat.or.kr](http://sandbox.kiat.or.kr)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rfz.go.kr](http://rfz.go.kr)
- ICT 규제 샌드박스. [www.sandbox.or.kr](http://www.sandbox.or.kr)

‘G-브리프’의 내용은  
과천시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과천도시공사의 자체 연구 결과입니다.